

## 12. 대구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23년 7월 7일
- 발의의원 : 조경구, 김정옥, 박소영, 박종필, 육정미,  
윤영애, 이영애, 이재숙, 이태손, 황순자 의원
- 회부일자 : 2023년 7월 10일
- 상정일자 : 제30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2023년 7월 25일), 수정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조경구 의원)

- 제안 이유
  - 지역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가사근로자 등의 권익증진 및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 조례의 적용 대상 규정(안 제3조)
    - 시에 거주하거나, 시 관할구역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 등

- 기본계획·시행계획의 구체적 내용과 주기, 수립 의무 규정(안 제5조)
  -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 가사근로자 근로환경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심의·자문 내용 규정(안 제7조)
- 가사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8조)

###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김재현)

#### □ 제안 취지 및 적법성 검토

- 본 제정 조례안은 맞벌이 가구 증가,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등에 따른 인구·가구 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가사서비스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대구시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반되어 발생하는 가사근로자의 낮은 임금, 고용 불안정성, 사회보험 가입 문제 등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인 내용이나 체계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과 자치사무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구성된 것으로 판단됨.

#### □ 주요 검토사항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 안 제1조(목적)는 본 조례안이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근로조건 향상 및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음.

- **안 제2조(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사서비스”, “가사근로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등 용어의 뜻을 「가사근로자법」의 정의에 따르도록 하여 용어의 정의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면서, 「가사근로자법」에서 포함하고 있지 않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추가로 정의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였음.

<p><b>「가사근로자법」</b></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li> <li>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li> <li>3. (생략)</li> <li>4.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li> </ol> <p><b>「대구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b></p> <p>제2조(정의) 1.~3.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등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li> </ol>
---

○ **조례의 적용 대상 규정(안 제3조)**

- **안 제3조(적용대상)**는 조례의 적용 대상으로 대구시 거주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시 관할구역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이하 “가사근로자 등”이라 한다.)로 정하였음.
- 「가사근로자법」이 “가사근로자”의 범위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면서, 다변화되고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등을 통한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례로 폭 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치 사무의 범위 내에서 달라진 고용 환경과 제정 조례안의 취지에 적합한 입법으로 판단됨.

- 다만, 「가사근로자법」이 법의 보호를 받는 “가사근로자”의 범위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그간 미인증업체와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이루어져 왔던 가사서비스 제공 행태를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도록 함으로써, 가사노동자의 고용유지와 임금·근로조건 등의 처우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조례로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장<sup>9)</sup>하는 것은 「가사근로자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의무 부여(안 제5조)

- 안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는 시장이 가사근로자 등에 대한 고용 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5년 주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제1항), 이에 따른 매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음(제2항).
- 또한,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9) 비슷한 조례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사항을 입법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는 본 제정조례안과 같이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가사근로자”와 별도로 정의하면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했는데(제3항), 계획수립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대구시 근로자 권리보호 정책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의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실태조사 시행 근거 마련(안 제6조)**

- 안 제6조(실태조사)는 안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의 확보와 통계 작성을 위해 시장이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 조건과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면서, 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했음.
- 가사근로자 등의 추정 규모와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여러 추정치<sup>10)</sup>가 있으나 정확한 통계자료는 국가적으로도 없는 실정이며, 대구시에서도 관련 현황과 통계자료의 파악이 전무한 상황이므로, 조례로 실태 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정확한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음.

10) 약 15만 6천명(통계청 2019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37만 4천명(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2019)

-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안 제7조)
  -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는 안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과 안 제6조의 실태조사, 가사근로자 등의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할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이 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했음.
  - 위원회의 성격과 위원 구성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지는 위원회의 난립을 줄이고, 시 근로자 권리보호 정책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입법적으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조문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행정적으로는 “대구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 가사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추가 위촉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p><b>「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b></p> <p>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li> <li>2. 근로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와 정책에 관한 사항</li> <li>3. 그 밖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ol> <p>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은 <b>노동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b>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li> <li>2.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추천하는 사람</li> <li>3.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li> <li>4. 노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

○ 가사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 내용의 구체적 명시(안 제8조)

- 안 제8조(지원사업) 제1항은 시장이 “가사근로자”의 지원사업으로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가사근로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가사근로자 고충상담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홍보·인식개선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근로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다시 명시 하면서, 제정 조례안에 따른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구분하여 규정하였는데,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가사근로자법」**

제3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검토 결과**

- 그간 가사근로는 가정의 구성원이 금전적 대가없이 행하는 비공식 노동이라는 인식에 더하여, 직업소개소, 주변 소개 등을 통한 정식 고용계약 없는 근로환경으로 인해 최저임금, 휴게시간, 사회보험 가입 등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실정임.
-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 고령화 등으로 인해 가사서비스의 시장과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전망이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정부에서도 최근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2021. 6. 15. 제정)을 제정하면서, 가사근로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본 제정조례안은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역 가사근로자 등에 대한 고용조건 개선과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반 지원사항을 조례에 담은 것으로 시의적절하고 입법 타당성이 있음.
- 다만,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가사근로자법」보다 지원대상을 확장하여 직업소개, 플랫폼 노동자 등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까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가사근로자법」이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가사근로자의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본 제정조례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양성과 가사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사근로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 추가적으로 신중한 입법 검토가 필요할 것임.

**「가사근로자법」**

제18조(조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4. 질의 및 답변 요지

질의요지	답변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사근로자는 근로시간과 내용의 양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근로관계법의 적용이 일률적으로 어려울텐데, 현황파악은 되어있는지?</li> <li>○ 조례에 규정된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사업을 미리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형태의 가사근로자의 현황을 먼저 파악하려면 조례에 규정된 실태조사를 선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음.</li> <li>○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는 포괄적인 범위로 「가사근로자법」에서 정한 “가사근로자”보다 그 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황파악 후 추후 조례로 지원사업을 정해도 될 것으로 판단됨.</li> </ul>

## 5. 토론요지

- 대구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함.

## 6. 수정안 요지

-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의 고충 처리를 위한 상담 지원

- 4.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
- 5. 그 밖에 시장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출석위원 전원찬성)

##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

## 10. 첨부서류

- 위원회 수정안 : [붙임1]

[붙임1] : 위원회 수정안

## 대구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

대구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의 고충 처리를 위한 상담 지원
4.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li> <li>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li> <li>3. 가사근로자의 고충 처리를 위한 상담 지원</li> <li>4.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li> <li>5. 그 밖에 시장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② 시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 지원</li> <li>2.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홍보</li> <li>3. 그 밖에 시장이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li> <li>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li> <li>3. 가사근로자의 고충 처리를 위한 상담 지원</li> <li>4.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li> <li>5. 그 밖에 시장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근로조건 향상 및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가사근로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등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시 관할구역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이하 “가사근로자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 등의 권익증진,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의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추진전략
  3. 가사근로자 등의 현황조사 및 근로환경 분석에 관한 사항
  4.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가사근로자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가사근로자 등의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8

조에 따른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의 고충 처리를 위한 상담 지원
4.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4.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입주가사근로자”란 가사근로자 중 이용자의 가구에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 (고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할 것
3.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5. 그 밖에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④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인증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지 아니한 기관은 이 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라고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기준, 방법, 결과 통지 및 변경인증·변경신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와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노동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노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동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